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중 소 기 업 제 품 구 매 촉 진 및
판 로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개별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추천할 시 그 지정 필요성을 명시한 추천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동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제품 추천 방법 등 명시(안 제6조 제2항·3항)

지정 전 사전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지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동 추천서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심사 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전단”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추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명시한 추천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업의 제조·생산·판매 및 수입품의 유통 현황
2. 중소기업의 제조·생산·판매 현황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납품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4.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고시하

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이하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이하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라 한다)에 위탁한다”를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한다”로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 · 고
시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
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
력을 가진다. 다만, 제2항에 따
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1항에 따라 지
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
는 날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

2. 중소기업의 제조·생산·판매
현황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납품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4.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로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추천서의 내용이 미
흡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제1항-----

----- 제4항-----

-----.

⑦ ----- 제6항-----

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
(이하 “중소기업제품·벤처기
업제품 판매회사”라 한다)에 위
탁한다.

1. ~ 8. (생략)

-----.

제27조(권한의 위탁 등) ① -----

--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
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
기업제품 판매회사(이하 “중소
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
회사”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
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
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545